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 5. 19.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4년 5월 12일

회부일자 : 1994년 5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 102 회 임시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 5. 19.)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업 인허가와 관련한 기부금품모집금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도내에서 등록 체육 시설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기탁한 성금」 규정은 기부 금품 모집 금지법령 및 정부의 준조세제도 폐지방침에 위배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우 병 수)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991년 5. 17. 제정 시행 하여온 조례이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있어 각종 준조세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하여 기부금품 등의 모집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볼때 인·허가를 조건으로한 기부금 접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령이나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위배되는 조례로서 존치될 필요성이 없는바

본 폐지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